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 7. 14.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431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7. 1. 강남구청장(관광진흥과)
- 나. 상정의결
 -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2021. 7. 14.)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뉴디자인국장 : 김희주)

- 가. 제안이유
 - 강남문화재단에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사업을 출연 예정인 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우리구 출연금 추경예산편성에 대해 강남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함.
- 나. 출연개요
 - 출연기관 :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출연목적 : 신진 디자이너 발굴, 주민과 함께하는 패션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창조적 문화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 출연 내용 :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 관내 패션업체, 디자이너, 구민들의 참여의 장 마련을 기본으로 한 축제 구성

- 관람객과 소통하는 쌍방향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출연 금 : 185,025천원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편성내용	산출기초(원)	편성액(천원)
소 계		185,025
○ 버추얼 디스플레이 설치	20,000,000원×1식 = 20,000,000원	20,000
○ 미디어아트 설치	20,000,000원×1식 = 20,000,000원	20,000
○ 방송 중계(TV, 유튜브 등)	25,000,000원×1식 = 25,000,000원	25,000
○ 출연자 대기실	2,500,000원×1식 = 2,500,000원	2,500
○ 사회자	4,000,000원×1식 = 4,000,000원	4,000
○ 공연팀	6,000,000원×2팀×1식 = 12,000,000원	12,000
○ 패션쇼(전문모델)	45,000,000원×1식×1회 = 45,000,000원	45,000
○ PM(행사총괄)	3,500,000원×1명×1회 = 3,500,000원	3,500
○ 연출, 운영감독 등	2,500,000원×1명×1회 = 2,500,000원	2,500
○ 현장운영인력	150,000원×50명×1회 = 7,500,000원	7,500
○ 헤어, 메이크업	150,000원×10명×1회 = 1,500,000원	1,500
○ 패션쇼 헬퍼	100,000원×20명×1회 = 2,000,000원	2,000
○ 패션쇼 진행스텝	200,000원×15명×1회 = 3,000,000원	3,000
○ 홍보비(인쇄물 등)	6,000,000원×1식 = 6,000,000원	6,000
○ 행사 보험료	2,000,000원×1식 = 2,000,000원	2,000
○ 결과보고서 제작 및 인쇄	1,000,000원×1식 = 1,000,000원	1,000
○ 행사운영 물자(방역포함)	12,000,000원×1회 = 12,000,000원	12,000
○ 기념품 제작	8,000,000원×1식 = 8,000,000원	8,000

○ 회의수당(기본)	150,000원×5명×7회 = 5,250,000원	5,250
○ 회의수당(초과)	50,000원×5명×7회 = 1,750,000원	1,750
○ 회의운영비	15,000×5명×7회 = 525,000원	525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 관계조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재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출연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1)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2)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에 출연할 수 있는 바 강남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³⁾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법령의 근거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⁴⁾에도 해당되어 출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출연금은 기부행위와 유사하여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예산으로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 를 통해 지방재정 관련 정보를 전면 공개(행사축제 등)하고, 기초자료를 개방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신규 행사축제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사 및 투자심사 실시하고 낭비성 행사축제 예산편성 방지를 위해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의 강남페스티벌 패션쇼의 축제 성과 등을 평가한 자료를 참고하여 패션쇼에 대한 평가, 출연금이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4)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 끝.